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 회칙

제정 1960년 5월 31일

개정 1980년 7월 24일

개정 1995년 6월 29일

개정 2002년 5월 31일

개정 2005년 5월 31일

개정 2006년 5월 31일

개정 2008년 5월 31일

개정 2012년 5월 31일

개정 2014년 5월 30일

개정 2025년 5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칙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의 회원 상호 간의 우의와 학문교류를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간호대학 동창회(이하 “동창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에 둔다.

제3조(활동) 동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우의 증진을 위한 활동
2. 모교 발전 및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동창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또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또는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졸업생으로 한다.

② 준회원은 모교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또는 교육대학원 과정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졸업생으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다음의 자로 한다.

1. 정회원이 아닌 자가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2. 모교 또는 동창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③ 명예회원은 발언권을 가지고 모교 발전을 위한 동창회의 사업에 협조하며 지원한다.

④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내야 하며 동창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동창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당연직부회장 3명(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 이대서울병원 간호부원장, 간호대학 부학장)
3. 총무 1명
4. 서기 1명
5. 회계 1명
6. 부장 각 1명
7. 감사 2명

제8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총회에서 득표순에 따라 2명을 선출한다.
- ③ 감사 이외의 임원에 대해서는 회장단이 선출한다.
- ④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을 제외하고는 임원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동창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동창회의 제반 사업 활동이 원활하도록 도모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총무는 회장단과 협력하여 동창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 ⑤ 서기는 총회, 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⑥ 회계는 동창회의 경상비 일체를 관리 담당한다.
- ⑦ 각 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부는 동창회의 문화사업을 추진한다.
 2. 사업부는 동창회의 자금 확충을 위하여 재정부와 협력하며 기타 사업을 추진한다.
 3. 재 정부는 동창회의 재정과 자금조성사업을 추진한다.
 4. 섭외부는 동창회의 사회교류 및 대외홍보 관계를 담당한다.
 5. 회우부는 회원 상호 간의 연락과 친교를 도모한다.
 6. 선교부는 동창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사역을 담당한다.
 7. 지역부는 국내외의 지회와 연락하며 이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 ⑧ 감사는 동창회의 회계, 결산을 감사하며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4장 총회 및 임원회

제11조(총회) ① 총회는 동창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정기 및 임시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임시총회는 임원 2/3 이상의 건의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장 및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업
5. 임원회에서 상정하는 사항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동창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임원회는 정기 및 임시로 하며 정기임원회는 분기별 1회, 임시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임원회는 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임원회는 기 또는 과에서 추천받은 간사를 위촉한다.
- ⑤ 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에 이를 상정한다,
 1.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장 및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업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 ⑥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면 임원회가 총회의 통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임원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고 추진받아야 한다.

제5장 재정

제13조(재정) ① 동창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평생회비, 발전기금, 찬조금 및 기타 사업조성금으로 충당한다.

- ② 신입회원의 평생회비는 경상비로 회계가 관리한다.
- ③ 발전기금은 재정부에서 적립한다.
- ④ 찬조금과 사업조성금은 목적별로 사용한다.

제14조(회계연도) 동창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로 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15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의 제안은 임원회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건의로 하며,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2025. 5. 30. 개정)

제1조(시행일)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사무직원) 동창회에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